

제 611 호  
1977. 6. 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 시 보

## 차 례

### ◎ 조 례

제 1170 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설치조례.....	3
제 1171 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사용료 징수조례.....	3
제 1172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12
제 1173 호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조례.....	13

### ◎ 고 시

제 178 호	도시계획시설 (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결정 및 지적승인.....	13
제 188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14
제 189 호	도시계획 ( 학교 ) 지적승인.....	14
제 190 호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 및 지적승인.....	15
제 191 호	도시계획사업 ( 주차장 ) 시행허가.....	16
제 193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자지적승인.....	1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774

제 194 호	출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6
◎ 공 고			
제 128 호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7
제 132 호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8
제 133 호	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공고	18
제 134 호	호	이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환지계획변경및 추가환지계획 인가공고	20
제 135 호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20
제 136 호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1
제 325 호	호	(도봉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48
◎ 예 규			
제 349 호	호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 지구내 사유지 관리 및 처분업무 취급요령	49
◎ 사 령			
			51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1170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7. 6.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성 ㉔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

제 1 조 ( 목적 ) 학생들의 체육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산하에 학생체육관 ( 이하 " 학생체육관 " 이라 한다 ) 을 설치한다.

제 2 조 ( 위치 )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둔다.

제 3 조 ( 관장 ) ①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학생체육관을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 정원 ) 학생체육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 사용료 ) ① 학생체육관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제 6 조 ( 위임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1171호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조례 " 를 이에 공포한다.

1977. 6.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성 ㉔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 이하 " 학생체육관 " 이라 한다 ) 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실내경기장과 이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사용과 방송(T.V 포함) 광고, 게시, 전람, 이동판매 및 대여를 포함한다.)

3. 「전용자」라 함은 실내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전용료」라 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이용료」라 한다.

5. 「관람자」라 함은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고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관람료」라 한다.

6. 「입장자」라 함은 전 각호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고,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입장료」라 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전 각호의 모든자를 말하고, 사용자가 납부하

는 요금을 「사용료」라 한다.

8. 「유료입장」이라함은 요금을 징수하고 입장시키는 것을 말하고,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입장시키는 것을 「무료입장」이라 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한도액) 학생체육관의 사용료 징수한도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 4 조 (시설사용허가등)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학생체육관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학생체육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전항의 시설사용허가불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학생체육행사 계획상 중복이 예상될 경우
-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p>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p>	<p>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p>
<p>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전항의 허가신청시에는 사용료의 기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관람무로시불 제외하고는 분납할 수 있다.</p>
<p>③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p>	<p>③전항의 허가서에는 기간, 시설과 설비 관계 및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와 허가조건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때</p>	<p>④학생체육관의 1일 전용시간은 다음과 같고, 전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1시간당 야간기본액의 50%를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p>
<p>2. 경기질서가 심히 소란할때</p>	<p>주 간 : 08:00 부터 18:00 야 간 : 19:00 부터 23:00</p>
<p>3.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p>	<p>제 6 조 (이용) ①학생체육관의 시설을 연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단체포함)는 관장이 지정한 일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④사용자가 전용하는 기간중에 자비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철거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비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관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이용자는 이용권을 구입</p>
<p>제 5 조 (전용) ①학생체육관의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p>	<p>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p>

하여야 하고 소정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시간마다 이용료의 반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 ①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는 소정의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관람자의 단체 입장 범위와 관람료의 할인방법 및 부할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장) ①전용자, 이용자, 관람자 이외의 자가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시설관리와 위생 및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관장은 공익 및 규칙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학생체육관의 귀책 사유가 없는한 원칙적

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허가를 받은 전용자 및 이용자가 7일 이전에 회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 이용료의 반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면책과 손해배상 책임)

①관장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허가의 취소나 철회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이용자가 시설등을 파손하거나 감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중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구하고 전용자가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용자는 관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기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매표) 이용자가 납부하는

<p>각종 요금중 관람권, 이용권 및 입장권은 학생체육관에서 배포한다.</p> <p>제 13 조 (위임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p>	<p>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별표 1 )

체 육 관 사 용 료

명 칭	구 분	토, 일요일 공 휴 일	정 일	비 고
전 용 료 (기본액)	1. 체육경기 행사			
	가. 주 간	14,000 원	11,000 원	( 전용시간 기준 )
	나. 야 간	20,000 "	15,000 "	( " )
	2. 체육이외의 행사			
	가. 주 간	71,000 원	54,000 원	( " )
	나. 야 간	85,000 "	65,000 "	( " )

명 칭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이 용 료	개 인	1인 2시간당	500 원	( 단체기준은 30명 이상 )
	단 체	2시간당	3,000 원	

명 칭	단 위	금 액	비 고		
입 장 료	1인1회	20 원			
명 칭	종 류	구 분 (국제, 국내)	금 액		비 고
			테 레 비	라 디 오	
중 제 방 송 료	프로레슬링	국제 경기	48,000	24,000	
		국내 경기	18,000	9,000	
	프로 권 투	국제 경기	48,000	24,000	
		국내 경기	18,000	9,000	
	농 구	국제 경기	24,000	12,000	
		국내 경기	6,000	3,000	
	배 구	국제 경기	12,000	6,000	
		국내 경기	3,000	1,500	
	아미추어 권 투	국제 경기	18,000	9,000	
		국내 경기	3,600	1,800	
	기 타 경 기	국제 경기	6,000	3,000	
		국내 경기	1,200	600	
	제 육 이 외 행사		48,000	24,000	





(별지제 1 호서식)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 )				
신청하는시설	시설					
	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신청내	부대시설	라디오중계	조명			
		라디오녹음	확성기			
		T.V 녹화	나이트			
		경기행사촬영	난방			
		상행위	냉방			
		T.V 중계				
용관람권	관람권	특별관람권	원	예매처	비고	
		일반관람권	원			
		학생군경권	원			
		초대권	원			
		단체권	일반			원
			학생			원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 . . . .						
신청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장 귀하						
첨부: 사업계획서 1봉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시설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사용허가의 시설

허가시설	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비고

3. 사용시의 부대설비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비고
중계방송		확성기						
T V 중계		난방						

4. 관 랑 권

구분	금액	매수	구분	금액	매수
특별관람권			단체권	일반	
일반관람권				학생군것	
학생군것권					

5. 사 용 료

구분	금액 (기본액)	산출기초	비고
건 용 료			
부대설비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계			

6. 조 건

위와 같이 허가함.

19 . . . .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장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수수로징수조례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조례제1172호

서울특별시 수수로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수로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57호를 58호로 하고  
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용지교부  
1매 3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  
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173 호

서울특별시지방소방공무원수당  
지급액에 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소방  
공무원수당규정 (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 제 9 조 제 2 항에 의하여 서  
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 이하 소  
방관이라 한다 ) 에게 지급할 수당  
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합숙생활지도수당 ) 수당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합숙생활  
지도수당은 1 일밤 1,500 원으로  
한다.

제 3 조 ( 편직, 편찬수당 ) 수당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편직, 편찬  
수당은 1 일당 1,500 원으로 한다

제 4 조 ( 교재연구수당 ) 수당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교재연구수당  
의 월지급액은 지방소방령 이상은  
월 33,000 원으로, 지방소방경은  
월 25,900 원으로, 지방소방위는 월  
20,800 원으로, 지방소방사 이하는  
월 17,700 원으로 한다.

제 5 조 ( 조정수당 ) 수당규정 제 7 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수당의 월지  
급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별 표

조정수당지급구분표

계 급 별	월 지 급 액
지방소방령이상	20,000 원
지방소방경	17,000
지방소방위	16,000
지방소방사	15,000
지방소방장	14,600
지방소방원	14,000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78 호

도시계획시설 ( 일단의 주택과  
조성사업 )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 '77. 3.16 )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6. 8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승권단지	경기도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 의 27 필	68,994㎡

서울특별시고시제 188 호

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 ( 77. 3.16 )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6. 1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미관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순 위	지구명	종 별	기 점	승 점	연 장 m	비 고
92	노선미 관지구	4종	회현동2 가 15	회현1가 145의 6	550	노선양 측 12m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89 호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6 호 ( 77. 6. 4 )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 77. 3.16 )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6. 13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학교 ( 중 · 고등학교 )	관악구	신림동산 203-2호의 3필지	28,786㎡ ( 8,708평 )	
별첨도면과 같음 ( 생략 )					
<p>◎ 서울특별시 고시제 190 호</p> <p>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 ( '77.3.16 ) 에 의한 권한</p> <p>가. 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p>		<p>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복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6. 6 서울특별시 장</p>			
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관악구 봉천동 611의 1호의 6필지			2,909 ( 880평 )	삼화교통
	동대문구 망우동 360의 1호의 3필지			1,653 ( 500평 )	서울버스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					
<p>◎ 서울특별시 고시제 191 호</p> <p>도시계획사업 ( 주차장 ) 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270 호 ( 76.10.2 )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 시내버스 주차장 )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p>		<p>제 2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및 제 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양서출장소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6. 17 서울특별시 장</p>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406-1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내버스주차장 용지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3,263㎡(987명)
4. 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43-1 중부운수주식회사 대표 이상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1977.10.6
6. 위치 및 계획면도 : 별첨 (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198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자지정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125호(77.4.27)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3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재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6.

서울특별시장

<승인 개요>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가락동 112-2 외 23필
2. 사업규모 및 명칭 : 중·고등학교신설
3. 사업규모 및 면적 : 12,065평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사업실시 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년
6. 위치도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94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제 46호(76.4.7)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아게 한다.

1977.6.10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의 위치 : 동대문구 휘경동 71.7 휘경동 100.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문동~ 휘경동간 간선하수도공사

3. 사업의 규모 : 암거설치 (4m x 3m x 2) L = 150.5m

암거개수 (4m x 3m x 2) L = 38m

암거개수 (3.5m x 3m x 3) L = 10m

보차도경계부력 (20 x 25 x 100)

L = 684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7.3.8 ~ 77.11.30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사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28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 영동계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아파트지구)중 일부 환지에정지 지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한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조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6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4,521.6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신사동 360의 13호의 21필지

◎ 서울특별시공고제 132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제3공구내 1172구획 시장용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시장용지 폐지)하고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조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6.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변경공람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000평

다. 변경위치 : 영동제1지구 3공구 1172구획

라. 변경목적 : 시장용지 용도변경

◎ 서울특별시공고제 133호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

<p>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 지급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1. 수당지급대상자</p> <p>공립 초, 중등학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p> <p>가. 연 령</p> <p>1) 60세이상</p> <p>2) 신체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 하는 자는 55세 이상</p> <p>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 통산)</p> <p>1) 30년이상</p> <p>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p> <p>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p> <p>나) 재직중 각급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p> <p>다) 재직중 도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p>	<p>받은 자</p> <p>2. 수당지급일 : 1977년 3월 31일</p> <p>3. 신청기간 : 1977년 7월 21일 ~ 7월 30일 ( 10일간 )</p> <p>4. 신청절차</p> <p>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독청을 거쳐 시, 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p> <p>5. 지급액</p> <p>기준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p> <p>6. 지급절차</p> <p>가. 대상자절정통지</p> <p>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에게 통지한다.</p> <p>나. 수당지급장소</p> <p>소속기관의 소개지불 관할하는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p> <p>7. 기타사항</p> <p>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것.</p> <p>1977. 6.</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p>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4호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 변경및추가환지계획인가공고

1. 서울특별시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부터 환지계획변경 및 추가 환지계획인가 신청에 의하여 동사업 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47조및 제 5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제 25 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도서와 같이 환 지계획변경 및 추가 환지계획을 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공 고 내 용

- 가. 사업명 : 이수지구토 지구획정리사업
-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밤배동, 사당동일부 토지
- 다. 환지계획변경및 추가환지계획인가 면적 : 36,584평
- 라. 관계도면 및 조서 : 별첨 (생략)

1977.6.2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5호

환지계획인 부분경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역촌, 도봉, 망우,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서류송달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할 것이나, 미수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역촌, 망우, 도봉, 김포, 토지구획정리 사업

2. 변경내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공릉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염창동 일부토지

3. 변경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  
 정비국 구획정리과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77호 (62.12.9)로  
 고시된 공덕동~원효로 1가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 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 및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6.21

서울특별시 경

공 략 계 요

1. 사업장위치 : 마포구 공덕동 438  
 의 2~용산구 원효로 1가 25의 2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공덕동~원효  
 로 1가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폭 = 28미터

나. 연장 = 1.470미터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11.3 ~ 77.12.31

6. 사용토는 수용할 토치 : 별첨토지조사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토 지 조 서 (마포구)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구 공덕동 440-2	대	19	공덕동 439	심순숙외 2인	
2	" 437-4	"	106	도화동 25-8	김규승외 2	
3	" 437-27	"	182	윤니동 55	김승구의 1	
4	" 437-25	"	84	동자동 35-28	이 재 화	
5	신공덕 54-3	"	13	신공덕 15-88	정 해 원	
6	" 56-64	"	28	공덕 430	황 경 진	
7	" 55	"	15	신공덕 56-40	박 영 신	
8	" 56-62	"	20	공덕 430	황 경 진	
9	" 57-3	"	16	"	"	
10	" 57-2	"	23	"	"	
11	" 57-7	"	7	신공덕 15-88	정 해 원	
12	" 56-72	"	12	공덕 430	황 경 진	
13	" 56-59	"	35	신공덕 56-1	김 동 용	
14	" 56-60	"	18	"	"	
15	" 56-32	"	30	신공덕 56-32	이 창 우	
16	" 56-73	"	17	" 56-54	김 우 형	
17	" 56-57	"	4	" 56-1	김 동 용	
18	" 56-31	"	22	" 56-1	"	
19	" 56-30	"	3	" 56-15	최 수 건	
20	" 56-66	"	18	" 56-25	이기형외 7	

No	위	치	각목	과제	소 계		성 명
					주	소	
21	신공덕	56-15	대	29	신공덕	56-15	최수권
22	"	56-16	"	35	"	56-16	김세형
23	"	56-17	"	14	"	56-26	김종대
24	"	56-18	"	14	"	56-27	조등순
25	"	56-17	"	28	영등포, 오류동	56-155	도순자
26	"	56-18	"	32	신공덕	56-18	김남숙
27	"	56-19	"	19	"	56-28	전전상권
28	"	56-33	"	3	"	56-33	박기형
29	"	56-34	"	1	"	56-34	이철우
30	"	57-6	"	1	공덕	438	황경진
31	"	124-1	"	26	신공덕	124	박태근
32	"	125-5	"	9		125-5	정현,섭외 7인
33	"	125-3	"	12		125-3	박은일
34	"	125-4	"	5	다흥동	243	박희석
35	"	123	"	24	신공덕	56-40	박영진
36	"	124-1	"	8	"	146-59	조화자
37	"	124-2	"	2	"	127-9	신성철
38	"	122-2	"	51	"	122	김백화
39	"	125-2	"	15	"	125-2	이인순
40	"	125-1	"	12	"	125-1	실천출식
41	"	127-96	"	5	"	127-10	지배성
42	"	127-11	"	5	"		"
43	"	127-98	"	24	"	127-14	강홍선
44	"	127-97	"	0.3	공덕	426	이유형
45	"	121	"	4.5	신공덕	121	차석조

51-24

제 611 호

시

보

1977.6.16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성 명
				주 소		
46	신 공역 127-100	대	3	신 공역	127 - 28	박 찬 회
47	" 127- 67	"	14	"	"	방 우 량
48	" 127-101	"	18.8	구 로	35 - 35	남 철 회
49	" 127- 54	"	33	신 공역	127 - 28	정 동 준
50	" 127-102	"	5	"	"	안 원 용
51	" 127-103	"	2	"	"	"
52	" 127-104	"	1	"	127 - 75	김 옥 배
53	" 127- 79	"	51	"	56 - 16	최 진 무
54	" 120- 2	"	26	"	120 - 2	강 순 봉
55	" 127- 73	"	22	"	127 - 28	손 성 만
56	" 120- 1	"	54	"	120 - 1	조 상 운
57	" 127- 74	"	30	"	327 - 28	이 영 찬
58	" 119	"	45	"	119	양 기 용
59	" 118	"	30	"	118	김 영 석
60	" 117	"	23	"	117	방 근 순
61	" 116- 1	"	14	"	116 - 1	김 군 자
62	" 116- 2	"	13	"	116 - 2	안 기 용
63	" 115-	"	40	"	115	이승부의5
64	" 114	"	70	"	114	이 문 흥
65	" 113- 1	"	95	"	113	이 해 운
66	" 112	"	23	"	"	"
67	" 111	"	14	"	111	조 오 상
68	" 127-110	"	29	"	127 - 28	유 대 형
69	" 110	"	31	"	110	황 회 조
70	" 109- 1	"	38	"	109	박 윤 대
71	" 108- 1	"	6	"	108	이흥순의4



No	위	치	지목	지적	소재지		지성명
					주	소	
72	신	공덕 86-3	대	26	신공덕	86-3	반농화
73	"	86-4	"	7	"	86-4	김정자
74	"	86-2	"	22	"	86-1	강모개
75	"	86-2	"	20	"	86-2	편덕운
76	"	84-1	"	1	"	84-1	이관봉
77	"	87	"	17	"	87	조득수
78	"	88	"	33	"	88	박희자
79	"	89-2	"	5	"	89-2	조명희
80	"	89-1	"	8	"	89-1	양운원
81	"	105-2	"	21	"	12-11	이예옥
82	"	105-1	"	23	"	105-1	이봉포
83	"	106	"	80	"	106	반용기
84	"	107-1	"	15	경기, 안성, 일죽, 능곡	37	현현용
85	"	130-119	"	0.3	신공덕	130-18	이순범
86	"	104-1	"	14	"	104-1	한옥연
87	"	104-2	"	6	"	104-2	김송길
88	"	104-3	"	19	"	104-3	박광익
89	"	104-4	"	6	영남포, 목동	230	조태환
90	"	103-1	"	7	신공덕	104-1	문옥연
91	"	103-2	"	5	"	104-2	김송길
92	"	103-3	"	22	"	104-3	송외적
93	"	103-4	"	29	한걸	380-20	김규영
94	"	103-5	"	13	신공덕	104-3	박광익
95	"	103-6	"	16	목동	230	조태환
96	"	103-7	"	22	신공덕	106	전승현
97	"	103-8	"	15	"	103-8	유자형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성 명
				수주 소	소	
98	신공덕 100- 9	대	7	신공덕 103- 9		전규환
99	" 100- 10	"	4	" 56- 13		강영성
100	" 130-116	"	14	" 130- 23		강병준
101	" 130-117	"	9	" 130- 21		김연식
102	" 130- 20	"	29	" 130- 20		이현찬
103	" 130- 19	"	15	" 130- 19		김석환
104	" 145- 12	"	3	" 145- 2		김상오
105	" 145- 11	"	13	" "		"
106	" 145- 4	"	13	" 145- 4		이경철외 5인
107	" 145- 5	"	26	" 145		최재인
108	" 102- 21	"	11	" 102		윤성열외 2
109	" 102- 1	"	55	" "		"
110	" 148- 77	"	8	" 148-77		이예준외 1인
111	" 148- 78	"	1	" 148-78		이대희
112	" 148-173	"	13	" 148- 1		반승서
113	" 148- 83	"	1	" 148-83		이정봉
114	" 148- 73	"	29	" 148- 1		황충석
115	" 148-181	"	26	" 148- 9		김명필
116	" 148- 69	"	19	" 148- 1		김덕순
117	" 148-223	"	13	" 148-14		방상학
118	" 148-220	"	5	" 148- 1		반응선
119	" 148-219	"	15	" 148-20		박윤수
120	" 148- 24	"	30	" 148-24		김도수
121	" 148- 23	"	20	" 148-182		김명중
122	" 148- 28	"	25	" 148-28		한수원
123	" 148- 27	"	24	" 148-27		장외명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계 지		성 명
				주 소		
124	신공덕 148-31	대	23	신공덕 148-31		심수일
125	" 148-32	"	26	" 148-32		김명근
126	" 148-33	"	21	" 148-33		주성호
127	" 148-36	"	4	" 148-36		강치욱
128	" 148-29	"	8	" 148-		홍재택
129	" 148-37	"	26	" 148-37		송원근
130	" 148-64	"	5	" 148-65		홍창원
131	" 148-63	"	35	" 148-63		일종철
132	" 148-42	"	20	" 148-42		김교성
133	" 148-40	"	31	" 148- 1		이복순
134	" 148-25	"	12	" 148-45		김언년
135	" 148-52	"	21	" 148- 1		양순남
136	" 148-53	"	10	" 148-53		이범우
137	" 148-59	"	11	" 148-54		강계수
138	" 148-198	"	12	" "		"
139	" 148-106	"	77	" 148-106		김진우
140	" 148-105	"	17	" 148-105		정선재
141	" 148-103	"	21	" 148-1		김태경
142	" 148-302	"	98	" 148-3		이선환
143	" 148-168	"	19	" 148-77		이예준외 1인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계 지		성 명
				주 소		
144	신덕동 148-192	대	2	신공덕 148-20		반운수
145	" 130-22	"	15	" 130-23		황보봉천
146	" 148-60	"	10	" 148-60		박철숙
147	" 148-199	"	13	" 148-60		"
148	" 148-34	"	21	" 148-34		업해농의2인
149	" 148-182	"	12	" 148-182		일석공
150	" 148-22	"	15.6	" 148-18		홍갑순
151	" 148-193	"	0.4	"		"
152	" 148-39	"	11	농산, 효창산 9-21		김관수
153	" 148-43	"	28	신공덕 139-177		김갑수
154	" 148-19	"	22	" 148-19		김점운
155	" 148-30	"	19	" 148-30		백도환
156	" 148-194	"	13	" 148-34		업해농의2인
157	" 148-38	"	12	" 139-177		조숙명
158	공덕동 438-6	"	295			국유지
159	" 439-1	"	4			삭울지
160	" 439-2	"	44			"
161	" 438-3	"	21			"
162	신덕동 56-63	"	22			"
163	" 56-58	"	6			"

No	원	치	지목	지적	소 제 대	
					주 소	성 명
164	신 공덕	56- 77	대	2		국
165	"	56- 29	"	21		"
166	"	56- 78	"	344		"
167	"	127- 13	"	24		"
168	"	127- 12	"	23		"
169	"	127- 68	"	24		"
170	"	127- 69	"	19		"
171	"	127- 48	"	3		"
172	"	127- 70	"	14		"
173	"	127- 99	"	1		"
174	"	127-105	"	3		"
175	"	127- 66	"	11		"
176	"	127- 88	"	15		"
177	"	127-47	"	2		"
178	"	127- 46	"	4		"
179	"	127- 45	"	4		"
180	"	127- 91	"	7		국 용 지
181	"	127-109	"	8		"
182	"	145- 10	잡	16		"
183	"	145- 9	대	202		"
184	"	148- 25	"	16		"
185	"	148- 74	"	2		"

№	위 치	지목	지적	소 개 지	
				주 소	성 명
186	선공덕 148-68	대	6		국 유 지
187	" 145-13	잡	29		"
188	" 146-99	대	8		"
189	" 146-100	"	7		"
190	" 146-101	"	15		"
191	" 146-102	"	10		"
192	" 146-98	"	1		"
193	" 146-103	"	1		"
194	" 148-222	"	2		"
195	" 148-221	"	7		"
196	" 148-16	"	14		"
197	" 148-21	"	39.5		"
198	" 148-160	"	19		"
209	" 148-26	"	13		"
200	" 148-41	"	30		"
201	" 148-162	"	16		"
202	" 148-62	"	3		"
203	" 148-61	"	3		"
204	" 148-44	"	8		"
205	" 148-224	"	7		"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계 지	
				주 소	성 명
206	신공덕 148-54	대	27		국 유 지
207	" 148-55	"	16		"
208	" 148-57	"	15		"
209	" 148-56	"	33		"
210	" 148-200	"	15		"
211	" 148-108	"	1		"
212	" 148-107	"	5.9		"
213	" 148-201	"	0.1		"
214	" 148-50	"	17		"
215	" 148-227	"	29.4		"
216	" 148-226	"	11.8		"
217	" 148-51	"	35		"
218	" 148-106	"	18		"
219	" 148-107	"	40		"
220	" 127-87	"	9		"
221	" 127-43	"	6		"
222	" 127-44	"	1		"
223	" 127-92	"	3		"
224	" 130-115	"	11		"
225	" 146-85	"	3		"
226	" 148-203	"	0.5		"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재 지	
				주 소	성 명
227	신공택 148-191	대	1		국 유 지
228	" 148- 48	"	2		"
229	" 148- 49	"	2		"
230	" 148-104	"	10		"
231	" 148-179	"	6		"
232	" 148- 89	"	0.3		"
233	" 127- 89	"	0.9		"

보 지 조 서

순위	소 재 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원효로1가	26- 1	대	12	26-51	대	24		국
2	"	26- 4	"	40	26-50	"	0.2		"
3	"	25- 2	"	396.4	25-11	"	89.9		"
4	"	25- 1	"	116.3	과동	"	과동		"
5	"	25- 4	"	355	"	"	"		"
6	"	25- 8	"	61.2	"	"	"		"
7	"	24-24	"	44	"	"	"		"
8	"	24-11	"	35	"	"	"	과 동	박 건 홍
9	"	24-25	"	17	34-30	"	13.1	원효로1가 24- 18	박 건 홍
10	"	24-20	"	15.8	24-29	"	6.2	" 24-10	이 동 석
11	"	24- 9	"	18	2428	"	2.7	" 24-19	문 금 석
12	"	23- 3	"	18.3	23-63	"	0.4	" 23- 3	감 중 현
13	"	23-46	"	2.4	23-46	"	2.4	" 23-46	송화현 최성외4
14	"	23-19	"	11.5	23-64	"	1.2	"	국
15	"	23-41	"	14.3	23-64	"	8	" 23-41	최 남 균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재지		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16	원효1가	23-2	대	44.6	23-65	대	43.7	원효1가 23-3	반성윤	
17	"	24-13	"	2	24-13	"	2	" 24-13	내권필용	
18	"	24-14	"	19	24-14	"	19		국	
19	"	23-1	"	26	23-1	"	26		"	
20	"	24-27	"	0.5	24-27	"	0.5		"	
21	"	23-24	"	42.6	23-24	"	42.6		국외1인 (석진우)	
22	"	23-23	"	4.3	23-23	"	4.3		"	
23	"	23-44	"	8	23-44	"	8		국외4인	
24	"	23-22	"	18	23-62	"	17.4	원효1가 23-22	최재원	
25	"	23-32	"	4.5	23-61	"	0.4	" 205-38	김화경	
26	"	23-5	"	17.4	23-5	"	17.4	" 23-6	홍석택	
27	"	23-37	"	17.5	23-37	"	17.5	" 23-6	"	
28	"	23-6	"	11.1	23-60	"	0.9	" 205-38	김화경	
29	"	23-34	"	16.5	23-59	"	2.3	" 23-38	임기봉	
30	"	23-36	"	27.3	23-36	"	27.3	이촌동 302-70	김시장	
31	"	23-40	"	22.10	23-40	"	22.10	-	국	
32	"	23-8	"	24.2	23-58	"	9.6	원효1가 79-3	오관식	
33	"	23-42	"	2.3	23-42	"	2.3		국	
34	"	23-49	"	22.4	23-57	"	19.6	원효1가 23-38	이희삼	
35	"	23-47	"	6.2	23-47	"	6.2		국	
36	"	23-39	"	24.9	23-39	"	24.9	남창동 239	김정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7	원효1가	23-29	대	8.3	23-29	대	8.3		국
38	"	23-28	"	3.2	23-56	"	0.4	원효1가 23-15	김복자
39	"	23-26	"	26.7	23-54	"	6.3	"	"
40	"	23-26	"	26.7	23-55	"	1.3	" 23-15	"
41	"	23-16	"	21.7	23-53	"	3.6	" 23-108	고찬은
42	"	23-25	"	28.3	23-52	"	4.3	" 23-10	이순자
43	"	23-10	"	24.2	23-51	"	3.3	"	건부순
44	"	23-9	"	33.9	23-50	"	6.9	" 23-9	김영택
45	"	23-27	"	8	23-27	"	8		국
46	"	23-17	"	36.2	23-17	"	36.2	혜화동 107	김준
47	"	23-18	"	56.4	23-18	"	56.4	"	"
48	원효로2가	1-43	"	1.20	1-43	"	1.20		국
49	"	1-82	"	66.0	1-82	"	66	원효2가 1-10	오해성
50	"	1-80	"	9.6	1-127	"	9.2	"	이재선
51	"	1-41	"	13.2	1-126	"	1.7	" 1-41	최기영
52	"	1-84	"	7.7	1-125	"	6.3	" 1-84	김진봉
53	"	1-40	"	7.9	1-124	"	6.3	" 1-40	윤정양
54	"	1-10	"	9.3	1-123	"	7.1	" 1-10	"
55	"	1-83	"	7.4	1-122	"	4.8	" 1-15	노영복
56	"	1-18	"	4.5	1-18	"	4.5	"	국
57	"	1-35	"	23.6	1-121	"	17.7	" 1-15	박은진
58	"	1-9	"	28.5	1-120	"	21.1	" 1-9	노병춘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59	원효2가	1-8	대	26.2	1-119	대	26.2	원효로2가 1-8	국지구길
60	"	1-62	"	15	1-118	"	2.6	" 1-62	김인지
61	"	1-44	"	6	1-111	"	6	"	국
62	"	1-45	"	30.4	1-117	"	9.6	" 1-45	조각선
63	"	1-13	"	29.1	1-113	"	29.1	"	국
64	"	1-12	"	4.7	1-112	"	4.7	"	"
65	"	1-46	"	3.5	1-116	"	0.9	"	"
66	"	1-18	"	4.5	1-115	"	2.7	"	"
67	"	1-19	"	4	1-114	"	2.4	"	"
68	"	1-47	"	26	1-113	"	13.9	효창동 37	유열
69	"	1-48	"	27	1-112	"	15.4	원효로2가 1-48	음용운외1
70	"	1-6	"	37	1-111	"	19.6	" 1-6	석주년
71	"	1-5	"	51.6	1-110	"	37.7	" 58-1	김희주
72	"	1-52	"	12.3	1-109	"	2.6	" 1-51	이광복
73	"	1-51	"	10	1-108	"	3.2	" 1-51	이광복
74	"	1-50	"	11	1-107	"	3.3	" 1-49	이종순
75	"	1-49	"	14.9	1-106	"	4.1	" 1-49	이종순
76	"	1-17	"	25.4	1-105	"	24.7	" 1-17	이대진
77	"	1-72	"	2.8	1-104	"	1.7	" 1-72	진정근
78	"	1-4	"	23.7	1-1	"	23.7	" 1-4	이명순
79	"	1-3	"	104.8	1-103	"	49.5	" 1-3	동양농업(주)
80	"	1-2	"	62.6	1-102	"	29.1	" 1-2	"
81	"	1-16	"	32.9	1-101	"	16	" 1-16	최알홍
82	"	1-53	"	24.2	1-100	"	5.5	" 1-53	백선주
83	"	1-69	"	6.5	1-69	"	6.5	" 1-69	조경백
84	"	1-1	"	20.7	1-99	"	18.3	"	국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85	원효2가	1-60	대	4.0	1-98	대	2.5		국
86	"	1-90	"	0.5	1-90	"	0.5	원효2가 1-57	김원목
87	"	1-55	"	27.3	1-97	"	8.2	" 1-55	라용무
88	효창동	25	"	162	25-1	"	6.1	효창동 25	민육인
89	"	30	"	17	30	"	17	원효2가 1-51	최창규
90	"	291	"	20	29	"	20	" 1-51	"
91	"	31-1	"	25.7	31-1	"	25.7	효창동 31-1	송정자
92	"	31-3	도	12	31-3	도	12		국
93	"	31-5	대	17	31-5	대	17	효창동 31-1	차진실의2
94	"	31-4	"	10.7	31-4	"	10.7	청파2가 10-25	신금숙
95	"	31-2	구거	7.6	31-2	구거	7.6		시
96	"	32-2	"	6.7	32-2	"	6.7		"
97	"	32-3	대	1	32-4	대	0.2		국
98	"	32-1	"	34.3	32-5	"	31.7		차진실
99	"	28-1	도	4.4	32-3	도	0.9		국
100	"	28	대	29.0	28-2	대	28.3	효창동 28	진상학
101	"	42-1	구거	8.6	42-4	구거	1		국
102	"	42-2	대	17.4	42-3	대	4.7		이석진
103	"	33-1	"	18.5	33-1	"	18.5	영등포7가290	김치영의5
104	"	33-2	구거	1.5	33-2	구거	1.5		시
105	"	34-1	대	14.1	34-1	대	14.1	효창동 34-1	한지연의1
106	"	34-2	구거	3.9	34-2	구거	3.9		시
107	"	35-1	대	6.9	35-1	대	6.9		한지연의1
108	"	36-2	구거	2.10	36-2	구거	2.10		시
109	"	36	대	23	36	대	23	효창동 36	정동안
110	"	37	"	35	37	"	35	" 37	유열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11	효창동	38	대	39	38-1	대	18.8	효창동 38	서원혁
112	"	52	"	46	51-1	"	28	" 52	정규산
113	"	53-2	"	29.8	51-2	"	29.8	" 53-2	장기연
114	"	53-1	"	28	51-1	"	28	" 53-1	장간규한
115	"	53-3	"	12.4	51-3	"	12.4	" 53-3	허봉이
116	"	53-4	"	29.8	51-4	"	29.8	" 53-4	"
117	"	50	"	15	50	"	15	" 51	신옥희
118	"	51-2	"	62.1	51-4	"	24.9	" 51-2	최소운
119	"	54	"	37	51	"	37	과 동	신남산
120	"	55	"	36	51	"	36	"	"
121	"	49-7	"	29.1	41-9	"	23.5	효창동	국
122	"	49-5	"	8	41-8	"	2.4	" 49-5	장만도
123	"	49-3	"	21.1	41-3	"	21.1	" 49-3	박순배
124	"	14-4	"	18.9	11-6	"	11.2	" 14-4	최태실
125	"	58	"	90	51-2	"	8	" 58	허중일
126	"	58	"	90	51-3	"	1.6	" 58	"
127	"	57	"	21.7	51-8	"	15.7	" 57	윤주은
128	"	57-4	"	15	51-7	"	14.5	" 57-4	이배식
129	"	57-2	"	14	51-2	"	14	" 57	강연희
130	"	57-3	"	15	51-3	"	15	" 57-3	정부흥
131	"	56	"	7	51	"	7	과 동	윤창억
132	"	57	"	21.70	57	"	21.70	"	윤주은
133	"	56-1	도	9	56-1	도	9	"	시
134	"	57-5	대	1.6	52-6	대	1.6	효창동 57	김상득
135	"	57-6	"	0.7	52-6	"	0.7	" 57	"
136	"	62-4	"	33.3	62-4	"	33.3	" 5-116	이종권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37	효창동	62-2	대	34.1	62-2	대	34.1	효창동 62	김충주
138	"	62-6	"	16.2	62-5	"	16.2	" 62-5	김남용
139	"	62-3	"	12.6	62-7	"	12.4		국
140	"	62	"	46.3	62-6	"	46		"
141	"	61-2	"	8.3	61-3	"	5.3	효창동 61-2	박태철
142	"	61-1	"	11.7	61-4	"	9.9	" 61-2	"
143	"	60	"	46	60-1	"	5.7	" 60-1	김덕중
144	"	60-2	"	0.3	60-2	"	0.3	" 60-1	"
145	"	59-2	"	3.9	59-4	"	0.9	" 59-2	강용구
146	"	67-1	"	20.72	67-3	"	2.40		김단임
147	"	67-2	"	28.90	67-4	"	27.40		"
148	"	68	"	89.07	68	"	89.00		배은수
149	"	69-1	"	35.72	69-3	"	27.30		임도숙
150	"	69-2	"	33.30	69-2	"	33.30		단범식
151	"	70-5	"	74.20	70-5	"	74.00	신촌 70-195	이창신
152	"	70-1	"	74.00	70-2	"	9.30		최산용기
153	"	70-14	"	2.60	70-14	"	2.62		박영재
154	"	70-13	"	25.00	70-13	"	26.00		"
155	"	70-12	"	28.10	70-12	"	28.10		노영식
156	"	70-6	도	6.30	70-6	도	6.30		이명환
157	"	70-2	대	29.00	70-19	대	6.90	효창동 70	강도안
158	"	70-3	"	23.00	70-18	"	4.10		김인숙
159	"	70-9	"	12.00	70-7	"	12.00		박인애
160	"	70-4	"	8.00	70-17	"	1.20		우승택
161	"	70-11	"	39.72	70-16	"	6.70		이운규
162	"	70-8	"	95.10	70-8	"	95.10	현효1가 17-51	임상국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63	효창동	71-1	대	16.30	71-1	대	16.30		강 덕 형
164	"	72	"	10.00	72	"	10.00		강 준 영
165	"	73-1	"	6.00	73-1	"	6.00		강 덕 형
166	"	74-8	"	22.10	74-8	"	20.10		김용준의 1
167	"	71-2	"	11.70	71-2	"	11.70		강 덕 형
168	"	70-10	"	15.30	70-10	"	15.30		박 인 애
169	"	70-9	"	8.77	70-15	"	2.22		김 종 덕
170	"	74-7	"	8.77	74-7	"	8.70		김용준의 1
171	"	74-9	"	5.90	74-9	"	5.90		"
172	"	73-4	"	0.50	73-4	"	0.50		국
173	"	73-5	"	2.90	73-5	"	2.90		"
174	"	73-6	"	5.00	73-6	"	5.00		"
175	"	73-7	"	3.40	73-7	"	3.40		"
176	"	73-2	"	1.60	73-2	"	1.60		김 선 문
177	"	73-3	철	3.60	73-3	철	3.60		국
178	"	74-1	대	20.50	74-10	대	20.50		김용준의 6
179	"	74-11	"	23.10	74-11	"	23.20		"
180	"	74-14	"	10.60	74-14	"	10.60		"
181	"	74-13	"	10.60	74-13	"	10.60		"
182	"	74-12	"	20.10	74-12	"	20.10		"
183	"	74	"	42.30	74-15	"	41.20		"
184	"	74-2	"	2.60	74-2	"	2.60		허 순
185	"	74-3	철	3.50	74-3	철	3.50		국
186	"	74-4	대	3.20	74-4	대	3.20		민 창 기
187	"	74-5	"	4.20	74-5	"	4.20		"
188	"	74-6	철	18.50	74-6	철	18.50		국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89	효창동	74-1	철	2.80	74-1	철	2.80		국
190	"	6-49	대	154.00	6-74	대	54.70		김재숙
191	"	5-121	철	77.30	5-649	철	74.70		국
192	"	88-4	대	12.70	88-7	대	5.40		"
193	"	88-5	"	0.60	88-5	"	0.60		"
194	"	75-4	도	5.70	75-4	도	5.70		시
195	"	75-7	"	21.70	75-7	"	21.70		"
196	"	251-4	대	2.60	251-4	대	2.60		서창환
197	"	251-3	"	1.00	251-3	"	1.00		김인순
198	"	251-1	"	14.00	251-1	"	14.00		국
199	"	251-2	"	15.00	251-2	"	15.00		"
200	"	252-1	"	7.70	252-1	"	7.70		김삼필외 4
201	"	252-3	"	13.30	252-3	"	13.30		"
202	"	252-4	"	8.30	252-4	"	8.30		"
203	"	252-5	"	18.00	252-5	"	18.00		"
204	"	252-6	"	15.70	252-6	"	15.70		"
205	"	252-7	"	4.00	252-7	"	4.00		"
206	"	252-8	"	33.00	252-8	"	33.00		"
207	"	250-2	"	33.00	250-2	"	33.00		이종훈
208	"	250-3	"	0.60	250-3	"	0.60		"
209	"	79-1	"	20.90	79-3	"	20.70		"
210	"	79-2	"	1.10	79-2	"	1.10		"
224	"	98-8	"	40.60	과동	"	40.60		백종규
225	"	244-1	"	17.3	"	"	17.3	도원동 8-63	박이환
226	"	244-2	"	12.7	"	"	12.7		김영원
227	"	245-1	"	6.7	243-7	"	4.0		강산적선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228	효창동	243-4	대	0.8	243-6	대	0.3		강산적신
229	"	243-3	"	26.1	243-5	"	15.9		정호철
230	"	243	"	1.0	243	"	과동		강산적신
231	"	242-5	"	11.8	242-9	"	6.3		최승길
232	"	242-1	"	29.3	242-7	"	20.7		최승길
233	"	241-1	"	19.4	241-3	"	5.0		박용주
234	"	242-6	철	4.0	242-8	철	2.4		강산적신
235	"	242-2	대	4.0	242-4	대	4.0		김계신
236	"	99-1	도	11.30	99-1	도	11.30		
211	"	250-1	대	14.00	250-1	대	14.00		장거영
212	"	246-1	"	65.60	246-1	"	65.00		최경옥
213	"	248	"	20.00	248	"	20.00		임귀순
214	"	249	"	15.00	249	"	15.00		이경래
215	"	247	"	36.00	247	"	36.00		김문두
216	"	246-2	"	18.00	246-2	"	18.00		국
217	"	245	"	25.00	245-1	"	24.10		
218	"	81-5	"	10.80	81-3	"	5.40		박인식
219	"	81-2	"	14.70	81-2	"	11.60		이인도
220	"	81-1	"	20.57	81-1	"	7.40		노성욱
221	"	80-2	"	32.00	80	"	11.60		이별만
222	"	96-3	"	17.70	96-4	"	13.00		신갑득
223	"	98-2	"	35.40	98-8	"	12.40		김영중
237	"	81-4	도	14.30	81-4	도	14.30		시
238	"	99	대	49.0	99	대	49.0		신상현
239	"	98-1	"	38.9	98-7	"	13.5		양승학
240	"	98-5	"	36.6	98-6	"	28.4		하인우외6
241	"	102	"	21.0	102-2	"	1.6		이원부

번호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242	효창동	102-1	도로	11.3	102-3	도로	3.9	효창동 104	市
243	"	101	대	6.0	101	대	6.0		양철훈
244	"	100	"	36.0	100	"	36.0		박영원
245	"	239	"	10.0	239	"	10.0		윤용규
246	"	238-2	"	23.4	238-5	"	0.1		조준희
247	"	238-1	"	23.0	238-4	"	18.2		영산철일
248	"	237-1	"	21.9	237-4	"	7.8		정태백
249	"	236-1	"	44.2	236-3	"	0.1		홍덕만
250	"	155-2	"	55.7	155-4	"	54.1		문협미남
251	"	153	"	54.0	153-1	"	38.4		최한희
252	"	154-1	"	19.0	154-1	"	19.0		최순희
253	"	154-2	"	44.0	154-2	"	44.0		최옥희
254	"	155-1	"	62.2	155-1	"	62.2		박성대
255	"	152-7	"	25.9	152-12	"	10.1		김도성
256	"	155-3	"	7.1	155-3	"	7.1		대협미남
257	"	152-8	"	27.2	152-11	"	1.9		신경숙
258	"	152-2	"	5.0	152-9	"	2.0		국
259	"	152-3	"	12.9	152-10	"	11.6		최기준
260	"	159-1	"	45	159-4	"	19.9		도세강
261	"	159-2	"	4.0	159-3	"	1.3		"
262	"	158	"	27.0	158	"	27.0		"
263	"	157	"	57.0	157	"	57.0		장주환
264	"	156	"	40.0	156-2	"	21.7		이경태
265	"	167-2	"	28.0	167-8	"	24.4		강철도
266	"	167-5	"	12.1	167-7	"	1.8		김영식.국
267	"	166-7	"	16.2	166-11	"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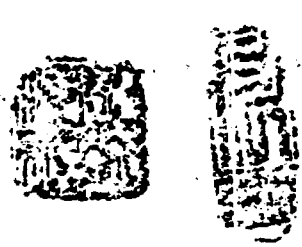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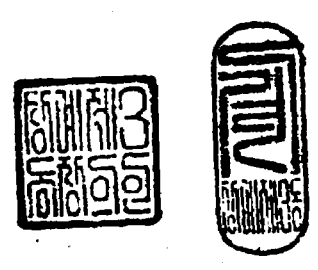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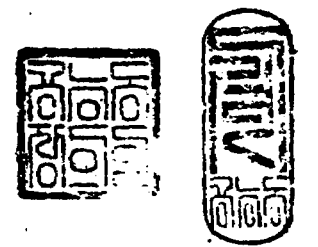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한(한) (수용비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268	효창동	169-7	대	1.5	161-16	대	0.1		국
269	"	166-10	"	0.7	166-10	"	0.7		국
270	"	166-6	"	13.2	166-6	"	13.2		송창우
271	"	167-3	"	4.7	167-3	"	4.7		국
272	"	167-6	도로	2.1	167-6	도	2.1		국
273	"	167-1	대	11.8	167-1	대	11.8		양유석
274	"	167-4	"	6.3	167-4	"	6.3		국
275	"	166-9	"	2.6	166-9	"	2.6		국
276	"	166-3	도	2.6	166-3	"	2.6		국
277	"	166-8	대	0.5	166-8	대	0.5		국
278	"	166-5	"	15.9	166-5	"	15.9		신순희 불이행
279	"	166-7	"	17.6	166-2	"	17.6		김공회 박성복
280	"	166-1	"	21.7	166-1	"	21.7		송덕택
281	"	165-	"	54	165-1	"	44.6		박영목
282	"	164-2	"	40.2	164-17	"	0.6		한천동
283	"	187-	"	56.0	187-1	"	0.1		최진도
284	"	164-14	"	1.8	164-16	"	0.2		이봉석
285	"	164-11	"	16.5	164-15	"	5.8		유승길
286	"	170-8	"	34.8	170-8	"	34.8		윤기형
287	"	169-9	"	29.1	169-9	"	29.1		정인성
288	"	169-4	"	12.1	169-4	"	12.1		국
289	"	169-9	"	29.1	169-14	"	16.1		남상순
290	"	65	"	74	65-1	"	22.4		이달진
297	"	169-1	"	5.3	169-15	"	4.0		국
298	"	170-5	"	29.7	169-13	"	9.0	169-5	송복남
299	"	170-6	"	27.3	169-12	"	3.0	169-6	이국선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지적	주소	성명	
300	효창동	170-5	대 4.9	(과 동)			169-6	이종선
301	"	170-1	" 3.4			"	"	
302	"	170-4	" 1.3				국	
303	"	170-9	" 88			170-9	박안홍	
304	"	170-7	" 16.9			170-7	송찬경	
305	"	170	" 7.2			170	박안홍	
306	"	170-2	" 14.7			170-2	박치홍	
307	"	170-1	도 6.7		도		시	
308	"	171-3	대 20.1	171-10	대 0.6	171-3	김종안	
309	"	171-2	도 10.1	171-8	도 0.3	"	국	
310	"	171-4	대 17.6	171-9	대 11.0	171-4	송찬경	
311	"	172-3	" 16.1	172-4	" 12.1	172-3	박시봉	
312	"	172-2	도 7.9	172-5	도 7.4	172-2	국	
313	"	176-1	대 7.5	172-1	대 7.5	172-2	박순복	
314	"	176-2	" 7.5	(과 동)			176-2	윤공원
315	"	177-1	" 19.0			177-1	박순복	
316	"	177-3	" 17			177-3	윤공원	
317	"	177-2	도 1.0				국	
318	"	178-1	대 14.2			178-1	유성원	
319	"	178-4	" 0.7			178-4	박종국	
320	"	179-1	" 0.2				국	
321	"	178-2	" 14.7			178-2	문희형	
322	"	179-5	" 0.9			179-5	국	
323	"	179-2	도 6.8			179-2	국	
324	"	179-3	대 16.6			179-3	이영원	
325	"	179-4	" 10.5			179-4	박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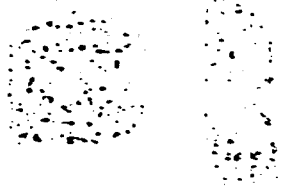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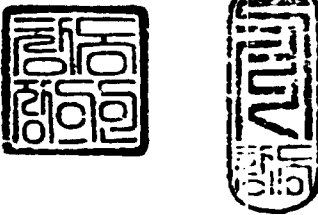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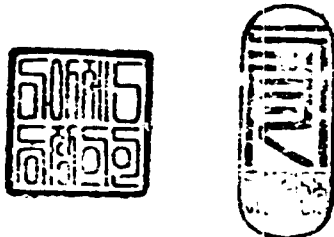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출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26	효창동	184-12	대	0.4	(과 동)				국
327	"	184-5	"	4	184-17	대	1.0	184-5	박봉규
328	"	180-1	"	22.9	180-5	"	10.7	180-1	이경보
329	"	180-2	"	18	180-4	"	0.1	180-2	한상준
330	"	180-4	"	2.1	(과 동)				국
331	"	184-4	"	16.9	184-16	대	5.3	184-4	이재은
332	"	184-1	"	16.6	184-1	"	16.6	184-1	이적두
333	"	184-11	"	4.7	(과 동)			184-11	김기필
334	"	184-8	"	14	184-15	대	6.7		국
335	"	184-13	"	4.6	(과 동)				국
336	"	184-9	"	11.2	184-14	대	0.3	184-9	국
337	"	189	"	34	(과 동)			189	심일선
338	"	188	"	36	188-2	대	30.1	188	채태수
339	"	190-8	"	2.0	(과 동)			190-8	최영균
340	"	190-6	"	13					임국성의인
341	"	190-1	도	9.0					"
342	"	190-7	대	4.9					국
343	"	190-5	"	1.5					국
344	"	190-9	"	3.1					최영국
345	"	190-4	"	10.7					전병익
346	"	190-2	"	10.1					임국성의인
347	"	190-3	도	4.6					국
348	"	189-1	도	14.7					국
349	"	191-2	대	8.0					최순태
350	"	191-1	"	4.0					김여우
351	"	192-3	"	1.4					한유희

순	소재지	본말권표시			본말권표시 (수용대용)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352	효창동	192-2	대	21.6	(과 동)				최 창 성
253	"	192-1	"	6.0					장 남 순
254	"	193	"	25	193-1	대	21	193	김 정 기
355	"	196-2	"	24	196-4	"	0.4	196-2	최 순 남
356	"	194	"	20	194-1	"	0.5	194	김 종 운
357	"	5-245	"	37.3	5-649	"	0.7	5-245	이 승 여
358	"	5-247	"	40	5-647	"	28.2	5-247	신 순 철
359	"	5-246	"	36	5-648	"	0.4	5-246	허 용 구
360	"	5-248	철	32	5-646	철	31.2		국
361	"	5-416	"	22	(과 동)				국
362	"	5-249	대	31.5				5-249	김 종 관
363	"	5-605	"	16.2				5-605	최 희 굴
364	"	5-250	"	41.3				5-250	김 동 석
365	"	5-251	"	39				5-251	김 선 익
366	"	5-290	"	51.7	5-663	대	45	5-290	성 기 주
367	"	5-312	철	22.2	5-662	철	13.6		국
368	"	5-311	"	68	5-643	"	66.1		국
369	"	5-219	대	57	5-644	대	31.2	5-219	윤 낙 영
370	"	5-220	철	54	5-645	철	5.2		국
371	"	5-221	대	61.7	5-645	대	0.1	5-221	대한수교 장 노 회 성
372	"	5-266	"	175.3	5-653	"	63.5	5-266	이 운 성
373	"	5-267	"	138.8	5-652	"	66	5-267	김 용 규
374	"	5-497	"	34.4	5-651	"	10.2		국
375	"	5-280	철	85.3					국
376	"	5-279	대	101	5-658	대	87.7	5-271	임 계 희
377	"	5-278	"	75	5-657	"	61.4	5-278	이 규 환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378	효 창	5-283	철	49.7	5-660	대	36.9	5-283	박영규
379	"	5-284	대	30.7	5-661	대	1.6	5-284	박인환
380	"	5-282	"	39.5	5-655	철	9.9		국
381	"	5-281	"	30	5-669	철	3.2		국
382	"	200-2	"	49.9	200-61	대	13	200-2	김봉영
383	"	200-12	필	70.8	200-15	대	2.2	200-12	성인근
384	"	5-269	철	49.8	-654	철	128.8		국
					-655		13.9		
385	"	5-274	대	74	5-656	대	31.5	5-274	이찬욱
386	"	5-275	대	74.3	(과 동)			5-275	홍승덕
387	"	5-276	철	89	( " )			5-276	박태순
388	"	5-277	대	50.3	( " )			5-277	최병남
389	"	5-270	대	53.7	( " )			5-270	박성희
390	"	5-271	"	41.7	( " )			5-271	김호열
391	"	5-272	"	41.0	( " )			5-272	서형식
392	"	5-145	철	1956.1	5-650	철	40.6	5-145	국
393	"	5-273	대	63	(과 동)			5-273	전용현
394	용 문	5-60	"	16.7	5-231	대	1.2	5-60	최의문
395	"	5-61	"	20	5-232	"	9.1	5-61	오기성
396	"	5-129	"	17	5-233	"	14.8	5-129	최태문
397	"	5-137	"	13.7	5-234	"	1.0		국
398	"	5-136	철	5.7	5-235	철	3.2		국
399	"	5-62	대	15	(과 동)			5-62	최의문

<p>◎ 도봉구공고제 325 호</p> <p>공 인 개 작 공 고</p> <p>다음과 같이 공인 및 개인을 폐기하고 개작 사용토록 하였기</p>		<p>이문 공고함</p> <p>1977. 6. 18</p> <p>도 봉 구 청 장</p>
<p>1. 공인명 : 상계 3 동, 공농동, 창동, 미아 5 동장, 지인 및 개인</p> <p>2. 사용개시일시 : 1977. 6. 20 09:00.</p> <p>3. 공인의 인형 : 다음</p>		
동 명	폐 기 인 영	신 조 인 영
<p>상계 제 3 동 장 인 및 계 인</p>		
<p>공농동장인 및 계 인</p>		



동 명	폐 기 인 영	신 조 인 영
<p>창동강인및 계 인</p>		
<p>미아계 5 동 강 인 및 계 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예 규</p> </div> <p>◎ 서울특별시예규제 349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지구내 시유지관리및처분업무 취 급 요 령</p> <p>제 1 조 ( 목적 ) 이 요령은 서울특별 시 시유재산관리및 처분업무요령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별률 규정함으로써 주택 개발 재개발사업 지구내의 (이하</p>		<p>「지구」라 한다)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업무 수행에 적용을 기한다 있다.</p> <p>제 2 조 ( 동기 ) 주택개발 촉진법 제 11 조 임시조치법의 의하에 서울특별시의 양여된 국, 공유지의 등기장기 업무 은 주택행정과장이 담당한다.</p> <p>제 3 조 ( 손해금 및 보상금전액 ) 1 지구 내 토지를 대부분은 매입재산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은 산정하지 아니한다.</p>

②서울특별시외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최초 매수통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통지 당시 시가의 년 6분 이상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손해추징금 산출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사용승락) 지구내 토지물 일시불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또는 가옥대장등재등을 위하여 그 토지의 사용승락의 요청이 있으면 잔금 납부이전이라도 사용승락을 할 수 있다.

제 5 조 (대부 및 매각) ①지구내 토지의 대부는 매각을 전제하며 대부계약과 매매계약은 동시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개발사업 시행이건이라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매각할 수 있다.

③일시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 잔금 납기일까지 잔금을 납입치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시에는 기허 납부한 계약금 및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④계약이 해제된 토지는 공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자가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⑤대부 대상자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를 분양받은자(계량 승인포함)와 그 권리의 포괄 승계인이어야 한다

⑥대부 및 매수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2.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대지 증명
3. 주민등록 초본
4. 현지계량 승인서 또는 정확지 배정서 기타 정당한 점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구청장(출장소장)의 점유자 조사보고로서 이에 가붙할 수 있다.
5. 시세, 국세 완납증 또는 미과세 증명

⑦지구내의 시유지를 매각키 위하여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1개월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준용)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요령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부 칙

- 1. 이 예규는 1977년 6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2. 이 예규 시행이전에 관리 및 처분한 재개발지구내 사유지의 관리 및 처분은 이 예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3.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불량주택재개발 지구내 사유지관리 및 처분업무 위급요령 (예규 311호)은 이를 폐지한다.

사 령

◎ 1977. 6. 14

장기용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 1977. 6. 15

신용권

도봉구 행정사무관시보 관세청 진출을 명함.

◎ 1977. 6. 18

장준협

예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7. 6.25

신종섭

도시가스과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무원법제 63조 제 3항에 의하여 휴직을 면함.